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7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김기현 · 권성동
정동만 · 박성민 · 성일종
박충권 · 김정재 · 고동진
김상훈 · 최은석 · 임종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,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.

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.

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24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가목3)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5년 12월 31일 및 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3.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. 기본공제 금액: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) · 2) (생 략) 3) <u>2025년 12월 31일</u>이 속 하는 과세연도: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 의 7, 중소기업은 100분의 12)에 상당하는 금액. 다 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. 나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	3. ----- 가. ----- ----- 1) · 2) (현행과 같음) 3) <u>2025년 12월 31일 및 2</u> <u>026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나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